# 【 의료인문학교육 소위원회 시행세칙 】

[신설 2021년 8월 31일]

**① (목적)** 이 시행세칙은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규정 11장에 명시된 교육과정 소위원회로 설치된 의료인문학교육 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인문학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연구하고 심의하는데 있다.

**② (적용범위)**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타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시행세칙에 따른다.

**③ (설치와 구성)**

1. **위원장은 의과대학장이 임명한다.**
2. 당연직은 인문사회의학교실 전임교원으로 한다.
3. 선출직 위원은 의과대학 교원 중에서 의과대학장의 추천으로 의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회는 위원장을 보조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의과대학교육에서 의료인문학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의료인문학교육과정 개설 및 변경 심의
2. 의료인문학교육과정 수업계획서 검토
3. 의료인문학교육 개별 교과목 평가 · 모니터링
4. 기타 의료인문학교육과정 업무에 관하여 의과대학장이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⑤ (회의)**

1. 회의는 학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하게 하거나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⑥ **(자료제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교실 또는 대학에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간사)**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기록보관)**
1.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며 위원장의 확인을 얻은 후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2.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회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학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비공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즉시 운영위원회와 관련 위원회 또는 교수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